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.

발 의 자 : 강승규 · 곽규택 · 박준태
김민전 · 김승수 · 김재섭
조지연 · 박수영 · 박덕흠
조배숙 · 김용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, 국세청장,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·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,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, 해상 치안·수사·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·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.

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,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

2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략)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국세청장, 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, <u>경찰청장</u> , 합동참모의장, 한국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,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